

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2. 7(토)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8(수)

다. 상정일자 : 2004. 4. 28(수) 제11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특위

2. 제 안 이 유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-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50%를 감액함.(안 제7조 제3항)
- 피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.(안 제8조 제1항)
-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,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게만 지급.(안 제8조 제2항)
-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, 소형 종이봉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.(안 제9조)

- 위반행위에 대한 다짐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.(안 제11조)

4. 검토 결과

- 본 조례는 기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피신고자와 행정기관과의 불필요한 다짐을 최소화하기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50%를 감액해주고
 - 피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만을 부과하고
 - 과태료 부과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자판기의 1회용컵 및 소형 종이봉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
-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, 입법예고를 거친 법안이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정확한 규제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.
- 기타 법령의 자구 및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